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99
------	----

제출년월일 : 1999년 10월 일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정이유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전립됨에 따라 판매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전시, 판매품목 규정(안 제5조)

라,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사용요율 규정(안 제6조)

마. 위탁 취소사유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계부처 승인: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해당없음

마. 신., 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평창군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치) 전시판매장은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335번지에 둔다.

제 3 조(운영주체)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일반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운영위원회)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조(전시판매품목) ①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2. 도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임산물
 3. 매장활성화를 위한 일반 생필품
 4. 비교전시를 위한 타시·도 특산품
- ② 다만, 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판매할 수 없다.

제 6 조(운영의 위탁)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일반인은 다음각호의 1과 같다.

1. 농·축·임업협동조합등 생산자 단체
2.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축·임산물 생산단체
3. 농업관련단체등 비영리단체

4. 영농조합법인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일반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수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 7 조(관리 · 운영비)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 수선유지비등의 관리비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 8 조(수탁자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제5조에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판매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